

4단계 BK21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교육연구단 운영내규

제정 2021.0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교육연구단 (이하 “에너지환경교육연구단”)의 4단계 BK21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내규의 내용은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제3조(교육연구단장) 에너지환경교육연구단의 모든 사업의 계획과 집행 및 평가는 교육연구단장의 권한과 책임 하에 시행된다.

제4조(참여교수) ① 참여교수는 에너지환경정책기술학과와 전임 및 겸임교수로서 교육부로부터 4단계 BK21 사업 참여교수로 허락된 자로 한다.

② 교육연구단 자체 평가 기준을 통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 결과에 따라 참여교수를 교체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 ① 에너지환경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부단장,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참여교수의 추천으로 교육연구단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 신청서에 따른 연간 사업계획
2. 참여연구실 현황 관리 및 업적평가
3. 대학원생 장학금 배분
4. 계약교수/박사후연구원 임면
5. 각종 운영세칙의 개폐
6. 기타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체교수회의) ① 교육연구단장은 사안에 따라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교수회의를 열 수 있다.

제2장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및 지원

제7조(참여자격)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석사과정은 입학 후 4학기 이내, 박사과정의 경우 입학 후 8학기 이내, 석박사 통합과정은 입학 후 12학기 이내로 제한한다. 다만,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휴학 및 군복무 등의 기간은 제외하며,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입학 후 5학기부터는 박사과정으로 간주한다.

제8조(전일제 의미) ① 전일제 대학원생이라 함은 다른 직업 없이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전념하는 대학원생을 의미한다.

② 전일제 대학원생 여부에 대한 판단은 고용보험, 직장 의료보험, 직장 국민연금 등의 가입 여부로 확인하며, 자격증 대여 형태의 변칙적 행위는 반드시 금한다.

③ 위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참여대학원생에서 제외되며, 지원받은 사업비가 있을 경우, 이를 환수 한다.

제9조(지원대학원생 선발) ① 에너지환경교육연구단의 연구 장학금은 대학원생의 학문연구를 진작시키고 학생 상호간의 경쟁적 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매 학기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를 지원대학원생으로 선발한다.

② 지원 대상이 되는 대학원생은 다음 첨부서류를 교육연구단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교육연구단 전체 사업비 현황, 연구실적, 교육연구단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학원생을 최종 선정한다. 다만, 1년차 신입생은 2, 4, 5호 서류는 제외한다.

1. 4대 보험 가입여부 확인서
2. 지도교수 추천서
3. 학업계획서(연구계획서)
4. 학업성적표
5. 연구업적 증빙자료(학술지, 학술대회발표)

제10조(지원 금액) 지원대학원생에게는 석사과정의 경우 1인당 최소 70만원/월, 박사과정의 경우 최소 130만원/월, 박사수료의 경우 최소 100만원/월 이상을 지원하며, 대학원생별 실제 지원액은 지도교수의 책임으로 조정될 수 있다.

제11조(의무) ①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 및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간강의는 반드시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외부, 주/야간을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하로 제한한다.

③ 연수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해외연수생에게는 해당 연수기간 동안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을 제한하며, 참여 또는 지원 받는 도중 휴학 및 졸업, 취업 등의 사유로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교육연구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3장 신진연구인력 선발 및 활용

제12조(정의) 신진연구인력은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생을 지칭한다.

제13조(채용 자격) ① 계약교수 및 박사후과정생의 채용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교수 : 박사학위 취득 후 산업체, 교육 또는 연구경력 1년 이상인 자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2/3이내)
2. 박사후과정생 : 박사학위 취득자
(자교 박사학위 취득자 비율 2/3이내)

제14조(선발) ① 지원자는 교육연구단장에게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교육연구단장은 매년 사업비의 규모와 지원자의 연구 업적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당자를 선발한다.

1. 이력서 1부
2. 경력증명서 (이력서 상의 모든 경력, 박사(및 학사)학위증명서 포함) 각 1부
3. 연구 분야에 대한 발표자료
4. 최근 3년간 연구 실적 목록 1부

제15조(권리 및 의무) ①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교육연구단에서 전일제로 연구에 종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육연구단장 또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다른 연구에 참여하여 연구비 등을 지원받거나 시간강의를 할 수 있다.

1. 박사후과정생: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 강의 허용
2. 계약교수: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 교외 강의 허용
- ③ 해외 연수는 가능하지만, 3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해외연수는 불가능하다.
- ④ 계약 종료시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전항 이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 (BK) 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본교 제규정에 따른다.

제16조(계약 기간) 신진연구인력의 계약 기간은 최대 4년까지 갱신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재계약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계약 기간 내 연구(논문) 업적을 포함한 결과보고서 및 연구계획서 평가를 통하여 결정된다.

제17조(처우) 퇴직금 및 인건비에 대한 고용보험 등 법정부담금 중 개인부담금을 포함하여 신진연구인력은 월 300만원 이상을 지원받으며, 재직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경우에는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기타) 위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 (BK) 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본교 제규정에 따른다.

제4장 국제학술회의 발표 및 장·단기 국제협력 지원

제19조(선발 기준) ① 국제학술회의 참석 및 장·단기 해외 연수 지원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선발한다.

1. 국제학술회의 발표: 3, 6, 9, 12월 10일까지 지도교수의 추천서와 함께 신청을 받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
2. 장기 해외 연수: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능력, 관련 연구 분야에서의 해외 우수 대학교(연구기관 포함)의 해당 교수(장)로부터의 추천서(초청장 필수제출), 장기연수 상세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도교수 추천 하에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발
3. 단기 해외 연수: 4단계 BK21 사업에서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에서의 발표나 현지 연구 수행 시 지원하며 연수상세계획서, 참가 국제학술대회 규모 및 발표연구 내용, 관련 연구 분야에서의 해외 우수 대학(연구기관 포함)의 해당 교수(장)로부터의 추천서(초청장/해당 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도교수 추천 하에 운영위원회를 통

해 선발

제20조(지원 금액) ① 지원 금액은 본교 「여비 규정」 내 국외 여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학술회의 발표의 경우, 학회 평판도, 구두발표 여부, 석/박사과정 연차, 기 지원액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여비 지원규모를 결정
2. 장기 해외 연수: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체재비의 경우는 본교 「여비 규정」 내 국외 여비 기준액의 50%내외 범위에서 지원하고, 항공료는 일반석 기준으로 실비를 지원. 필요시, 연수기관과의 상호 협약에 따른 의료보험비, 수업료 등의 제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체재비 기준액은 본교 「여비 규정」 내 국외 여비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통해 매년 증액될 수 있음
3. 단기 해외 연수: 본교 「여비 규정」 내 국외 여비 기준액 범위 이내에서 체재비를 지원하고, 항공료는 일반석을 기준으로 실비를 지원. 국제학술대회 참가시, 참가에 따른 등록비도 해당 증빙에 따라 지원
4. 연수비 지급은 해당 국가의 입/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
5. 장기 연수의 경우, 연수비 지원은 최대 6개월을 원칙으로 하고, 6개월 초과시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초과되는 연수 기간에 대한 지원을 결정

제21조(제출 서류)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발된 해외 연수생은 최소한 출국 예정일 1개월 전 및 입국 후 1개월 내에 교육연구단으로 연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본교 산학협력단의 「교외 연구비 관리지침」 내 양식을 따른다.

제22조(준수 사항) 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연수자 본인이 진다.

1. 연수자는 해외연수 기관의 제반 규정을 숙지, 준수하여야 함
2. 연수자는 연수 기간 중 최선을 다하여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일시귀국의 과다 등 연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심한 품위 손상 등으로 해외 연수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으며 기 지원액도 다시 환수할 수 있음

제5장 해외학자 초빙 및 활용

제23조(정의) ① 해외학자 초빙이라 함은 본 교육연구단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고 국제 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외학자를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 연구발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해외학자는 해외 소재 대학, 연구소, 기업체 소속의 교수 또는 연구원으로서,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지 않은 자를 의미한다.

제24조(초빙대상자) ① 초빙대상자는 해당 연구 분야에서 괄목할 학문적 성과를 이룩한 것이 인정되는 석학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한다.

1. 국제저명학술지에 해당분야의 연구논문을 등재한 자
2.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될 만한 경력이 있는 자
3. 해당분야의 학문적 성취에 대한 수상경력이 있는 자

4. 많은 학문적인 저서를 통해 학문의 깊이를 인정할 수 있는 자
5. 외국국적을 소지하고 학부 및 대학원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자
6. 외국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탁월한 연구업적이 있는 우리나라 국적 소지자

제25조(활용) ① 해외학자를 활용한 교육 및 연구 계획은 다음과 같으며, 활용방안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1. 비대면 온라인 강의
2. 초청세미나를 통한 강연
3. 단기방문(1주)을 통한 본 교육연구단과의 공동연구 기획

제26조(지원) ① 해외학자의 국내 실 체류 기간 동안의 체재비 및 항공료, 특별세미나 및 강의에 대한 강연료(적합한 비자 취득시 해당) 등을 지원하며, 본교 산학협력단의 「교외 연구비 관리지침」 내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② 사업기간 중 해외학자가 국내 대학으로 이직하거나 전임으로 임용되는 경우, 임용시점 이후에는 해당 해외학자에게 초빙 관련 비용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③ 출장비 산정기준 초과 금액, 관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과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7조(기타) 위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연구재단의 「4단계 두뇌한국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준한다.

제6장 참여 교수 성과급 지급 및 업적 평가

제28조(시행) ① 업적 평가는 본 교육연구단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가능한 교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며, 평가 기간은 당해년도 사업 종료되는 시점에서 지난 일 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한다.

② 업적 평가의 결과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 참여교수 결정 및 성과급 집행액 등을 결정한다. 다만, 1차년도와 8차년도의 경우, 당해년도 사업기간(6개월)을 고려하여 적용한다.

제29조(시행 시기) 매년 당해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2월 중순 경에 시행하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제30조(평가 기준) ① 업적 평가는 별표의 평가 지표를 기준으로 내부 평가를 시행한다.

② 평가 지표 및 배점은 변경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변경 사항을 결정하여 적용한다.

③ 성과급의 지급은 참여교수별 환산 점수를 기준으로 하되, 환산 점수별 지급 금액은 평가 후 예산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1조(평가 결과) 평가 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교육연구단장이 공표한다.

제32조(참여교수 교체) 결과에 따라 차년도 참여교수 교체가 진행되며,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하는 참여교수 교체 요청 절차에 따라 실적을 제출하고 교체를 공식적으로 요청

한다.

제33조(성과급) 참여교수에 한해, 성과급은 1인당 연 480만원(1차년도 및 8차년도의 경우 240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7장 부실학술활동 예방

제34조(정의) 교육연구단의 연구결과물을 논문이나 학회에서 발표 시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와 학술대회를 안내하기 위함이며, 건전한 학술지 혹은 학술대회란 관련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발표할 연구논문이 채택되는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를 의미한다.

제35조(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술지 논문 투고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① 논문 투고 시 영리 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적정한 동료심사를 운영하지 않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실학술지에 투고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인가?
2. 출판사 연락처 등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3. 편집위원에 대해 알고 있는가?
4. 명확한 동료평가(Peer review)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가?
5. 논문 검색 서비스에서 색인이 가능한가?

제36조(부실하거나 약탈적인 학회 참석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 ① 학회 참석 시 영리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적정한 동료심사 및 발표과정을 운영하지 않고,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점검한다.

1. 학회 개최장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가?
2.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가?
3.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가?
4. 범위와 목적이 관심분야에 적합한가?
5. 기조 연설자 및 편집위원들에 대해 알고 있는가?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업적 평가 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100)
연구	- 대표 논문 1편 우수성(산업사회문제해결 기여, 타 분야 연구자 협업 등 융합연구 기여도)	20
교육	- 융합교과목 등 교육과정에 기여하는 교과목 개설 및 개편 - 참여대학원생 지도 - 창업, 특허, 실험실 안전관리, 연구윤리 등 관련 교육실적 - 강의자료 공개실적	20
산학협력 및 봉사	- 산학 간 교류 실적(컨설팅, 용역과제, 세미나, 기술이전/지도, 창업지원 등) - 지역공동체 기여 실적(지식나눔행사, 학회, 협회, 위원회 등)	20
국제화	- 교수 국제공동연구 실적(논문, 프로젝트) - 국제학술활동 참여실적(조직위원회, 좌장, 국제학술지 편집위원장) - 외국연구자(해외학자 초빙) 및 연구기관 교류실적(MOU 건 수)	20
교육연구단 기여도	- 교육연구단 프로그램 운영 기여도 - 운영위원회 참여	20